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부과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및 기준보수 적용(안 제3조, 제5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고, 예술인의 기준보수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부과(안 제57조

의2, 제19조의3)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동일하게 1.6%(예술인 0.8%, 사업주 0.8%)로 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정산 및 보수총액 등의 신고(안 제57조의3, 안 제19조의6, 안 제19조의7)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28조에서 제30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이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
보수보다 낮은 경우

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9까지로
하고,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월평균보수 산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

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
는 월의 전월에 매월 단위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중
사개월수로 나눈 금액

2. 당해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중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

④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하한액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
호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하한액”이라 한다)로 하고, 제3항에 따라 산
정한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예
술인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각각 적용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등이 근로 등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⑥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6(보험료의 정산) 법 제16조의9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월별보험료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하한액의 합계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제1항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전년도 중에 노무를 새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근로자를”

을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예술인으로부터 새로 노무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예술인으로부터 새로 노무를 제공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말한다)”를 “말한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를 “제19조의3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1호”를 “제3조의3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관계”를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로,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을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술인이 제7항제2호·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을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으로, “근로자”를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를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내역명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인”을 “근로자와 예술인인”으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및 예술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로 한다. 제29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및 예술인이”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및 예술인의”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를 “종사하는 근로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로, “근로자는”을 “근로자 및 예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가”를 “근로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로, “일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지원되었음”을 “잘못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및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게 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제45조제1항 중 “법 제5조”를 “법 제5조 및 법 제4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5호 중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를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9.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자료 제56조의9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제57조를 제58조로 하고, 제57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필요경비 인정
및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의2(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
료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한다.

제57조의3(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법 제48조
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예술인에게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이하 “예술인의 보수”라
한다)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예술인이 부
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법 제48조의2제6항·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
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보
험가입자별로 원천공제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원천공제

하여야 한다.

제57조의4(준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해서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12.10.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 제16조의10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예술인	예술인	예술인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마.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위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10, 제17조 및 제19조의 위반행위

는 그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u>제19조의3(월평균보수 산정 등)</u>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매월 단위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

2. 당해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 총액을 해당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

④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하한액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하한액”이라 한다)로 하고,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등이 근로 등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⑥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3 (생략)

제19조의4(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 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3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생략)

<신설>

제19조의4 (현행 제19조의3과 같음)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 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

----- 제19조의4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보험료의 정산) 법 제16조의9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

수총액	--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 종료하거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④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④ -----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을 종료-----.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사	----- 고용하거나 예술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1. 근로자 또는 예술인-----
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인으로부터 새로 노무를 제공받	번호	--
다음 각 호와 같다.	는 -----.	2.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	2.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1.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근로자 또는 예술인-----	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	-----
및 주소	-----	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 말한다) 또는
2.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	2.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이 종
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	-----		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
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 말한다), 예		조의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술인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		상실일을 말한다)
	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		3. 근로자 또는 예술인-----
	의5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		⑦ -----
	득일을 말한다)		----- 근로자 또는
3. 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3. 제19조의3제3항제2호-----	3.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예술인이 다른 -----
따른 월평균보수	-----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	-----
⑤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	⑤ -----	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	
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	-----	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근로자 또는 예술인-----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또는 휴직종료일의 변경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근	제3조의3제2호-----	⑧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⑧ -----
로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근로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 따른
⑥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⑥ -----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술인이 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7항제2호·제3호에 따른 -----
		호와 같다.	-----.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 종사하는 근로자 및
 예술인인 -----

 ----- 근로자 및 예술인
 은 -----

 -----.
 ② -----

 -----.

 ----- 근로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
 ----- 일용근로자
 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에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2. (생략)
 <신설>

③ ④ (생략)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1. 2. (생략)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술인-----
 -----근로내용·노무제
 공내용 확인신고서-----

 -.
 1. 2.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
 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
 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
 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
 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3항에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가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및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게 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4. ----- 지원대상----- ----- 잘못 지원되었음-----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 및 법 제48조의2제1항----- ----- ----- ----- ----- ----- -----
②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 ----- ----- ----- ----- -----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자료 ----- ----- ----- ----- ----- ----- -----
16. ~ 19의8. (생략)	16. ~ 19의8. (현행과 같음)
<신설>	19의9.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자료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제56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illegible]

1. ~ 23. (현행과 같음)

24.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
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
한 사무

제57조(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
는 금품) 법 제48조의2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
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
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한 필요경비 인정 및 산정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
다.

제57조의2(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율)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신 설>

고용보험료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한다.

제57조의3(예술인에 대한 고용보
험료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
험료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인 예술인에게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이
하 “예술인의 보수”라 한다)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예술
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법 제48조의2 제6항·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 (생 략)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보험가입자별로 원천공제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제57조의4(준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해서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58조 (현행 제57조와 같음) [별표 2]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 제16조의10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재산보험료의 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u>근로자 또는 예술인</u>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u>근로자 또는 예술인</u>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u>근로자 또는 예술인</u>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다. 법 제29조의3제1항(<u>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마. 법 제44조(<u>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45조제1항(<u>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위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10, 제17조 및 제19조의 위반행위

는 그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